

캐나다의 수입검사 및 식품위생제도

1. 수입검사제도

가. 개요

- 캐나다는 규정의 적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로 법의 준수여부에 따른 처벌과 보상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규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행정적으로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처리
- 따라서 상품 수출시 처음부터 규정을 잘 준수하여 캐나다와의 사업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기본적으로 건강과 식품안전 규정 및 라벨링 규정이 포함된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의 적용을 받음.
- 수입품목, 수출국, 캐나다 수입지역 등에 따라 각종 수입허가나 수출국의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보건안전

- 근거법 : Food and Drug Acts and Regulation
-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의 공급을 위하여 국내산과 수입산 등 캐나다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집행은 형

사법으로 규정

- 판매금지식품 : 동법 Section 4
 - 독이 있거나 해로운 물질을 함유한 식품
 -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
 - 전체나 부분적으로 불결, 부패, 혐오스럽거나 질병에 감염된 동물이나 식물의 물질을 포함한 식품
 - 변형된 식품
 -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 준비, 보존, 포장, 저장된 식품

□ 바람직한 수입행위(Good Importing Practices)

- '바람직한 수입행위'는 식품 수입 계획에서 캐나다내 유통까지 식품 수입의 모든 단계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적절한 식품취급 절차로서 현재 자발적 시행안이나 Food and Drug Regulations의 수정안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규정화될 전망이다.

나. 신선 과일 및 채소

1) 관련법 및 구비서류

- 신선 과일 및 채소, 견과류, 식용 곰팡이(버섯류) 등은 품질, 라벨링, 포장, 등급판정, 식품안전 등의 측면에서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의 적용

○ 구비서류

- 신선 농산물의 선적시는 수입업체 증명서로 확실한 구매협정이 체결 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Confirmation of Sale form” 3부를 구비 하며, 수입업체는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발급의 “Produce License”를 취득해야 함.
- 해당 품목별 수입허가 및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2) 식물검역

○ Plant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

- 질병 및 해충의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산 신선과 일 및 채소에 대해서는 식물검역 증명서 요구

○ 수입요구조건에서 제외 품목

- 건조 및 가공 제품
- 신선 감귤류 및 열대성 과일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기후상 정착할 수 있는 해충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 신선과일류의 수입요구조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도착후 검역 필요

〈수입요구조건〉

- 도착후 감사(audit)적 검역을 실시
- 해충, 흙,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함.
- 선적서류에 원산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품종별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와 수입국 수입허가서 필요

〈미대륙외의 지역산 수입금지 품목〉

- 품목별 시범수입이 진행중인 국가 및 보다 자세한 정보는 CFIA 확인 필요
- 아몬드(*Prunus* spp.) : 수입금지, 종자 포함
 - 사과(*Malus* spp.) : 영국, 벨지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지의 지정된 지역, 종자 제외, 일본 후지 품종 시범수

입, 한국 시범수입

- 살구(*Prunus* spp.) : 수입금지, 종자포함
- 수중식물 : *Myriophyllum* spp., *Trapa* spp., *Elodea densa*, *Hydrilla verticillata* 금지, 종자포함
- 발삼전나무(*Abies* spp.) :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 금지, 종자 제외
- 매자나무속 식물(*Berberis*, *Mahoberberis*, *Mahonia* spp.) : 일부 품종 제외 금지, 종자포함
- 블루베리(*Vaccinium* spp.), 크랜베리, 링곤베리, 허클베리 : 사전승인이 없을 경우 호주 제외 금지, 종자제외
- 털갈매나무(*Rhamnus* spp.) : 일부 품종 제외 금지, 종자포함
- 체리(*Prunus* spp.) : 영국, 벨지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P. avium*, *P. cerasus*, *P. effusus*, *P. laurocerasus*, *P. mahaleb*, *P. padus*, *P. sargentii*, *P. serotina*, *P. serrula*, *P. serrulata*, *P. subhirtella*, *P. virginian*, *P. yedoensis*를 제외한 품종 금지, 종자포함
- 국화(*Chrysanthemum* spp., *Dendranthema* spp., *Pyrethrum uliginosum*) : 프랑스의 지정된 지역 제외 금지, 종자 제외
- 건포도(*Ribes* spp.) : 유럽산 금지, 종자제외
- 미송(*Pseudotsuga* spp.) : 수입금지, 종자제외
- 가지(*Solanum melongena*) : 수입금지, 종자제외
- 느릅나무(*Ulmus* spp., *Zelkova* spp.) : 온타리오, 퀘벡, 뉴브룬스윅 제외 금지, 종자제외
- 구스베리(*Ribes* spp.) : 유럽산 금지, 종자제외
- 포도(*Vitis* spp.) : 프랑스, 독일 지정된 지역 제외 금지, 종자제외
- 삼, 대마(*Cannabis sativa*) : 보건부 라이선스 필요, 종자포함
- 노간주나무(*Juniperus* spp.) : 알바니아, 알제리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지움, 불가리아, 구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

- 태리,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타, 모노코, 모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터키, 바티칸시티, 구 소련, 구 유고슬라비아, 영국산 금지, 종자 제외
- 낙엽송(Larix spp.): 수입금지, 종자제외
 - 승도복숭아(Prunus spp.): 수입금지, 종자포함
 - 복숭아(Prunus spp.): 수입금지, 종자포함
 - 서양배(Pyrus spp.): 영국, 벨지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지정된 지역산 제외 금지, 종자제외
 - 고추(Capsicum spp.): 수입금지, 종자제외
 - 소나무(Pinus spp.): 수입금지, 종자제외
 - 자두(Prunus spp.): 수입금지, 종자제외
 - 꽃가루(Prunus spp.): 수입금지
 - 포플러(Populus spp.): 유럽산 금지, 종자제외
 - 감자(Solanum tuberosum): 수입금지, 꽃에서 나온 원래종자 제외
 - 마르멜로(Cydonia spp., Chaenomeles spp.): 영국, 벨지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제외 금지, 종자제외
 - 흙 및 관련물질: 수입금지
 - 가문비나무(Picea spp.): 네덜란드의 지정된 지역 제외 금지, 종자 제외
 - 딸기(Fragaria spp.): 사전승인 없으면 금지, 종자제외
 - 담배(Nicotiana tabacum): 수입금지, 종자제외
 -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수입금지, 종자제외
 - 버드나무(Salix spp.): 유럽, 터키산 금지, 종자제외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품목의 수입절차>

캐나다로의 반입 승인이 되지 않은 품목은 해충위험도 평가와 시범 수입 등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함.

- ① 수출국의 식물보호기관이나 캐나다 수입업체가 특정상품의 캐나다 내 수입승인을 위하여 상품정보 및 요청배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문화된 요청서를 다음의 기관에 제출

Policy Section
 Plant Protection Division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nd Floor, West Wing
 50 Camelot Drive
 Nepean, Ontario, CANADA
 Tel : 613-941-5671
 Fax : 613-952-8000

- ② 캐나다측 Plant Protection Division이 해충위험도를 평가후 시범수입 여부 결정
- ③ 시범수입기간 동안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정규수입 허가

다. 육류 및 육가공품

- 육류 및 가금육의 수입관련 규정은 "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s" 와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에 기재
- 캐나다로의 육류 수출은 수출국의 육류검역 시스템이 캐나다의 기준과 동일함이 입증된 후 수출을 의도하는 육류 가공공장이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는 Canadian Food Inspection System에서 관장
 - 현재 한국의 육류검역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산 육류/가금육 및 2%이상 함유 제품의 수입금지
- 육류 선적품은 수출국 공인 육류검역기관의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도착 직후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검역
-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육류 수입품도 동물 질병 전파방지를 위하여 "Health of Animals Act and Regulations"의 규정 준수 요구
 - Memoranda D19-1-1 및 D19-1-2에 육류, 육류가공품, 육류부산물 등의 정밀검사 대상 리스트 기재
- 모든 육가공품 및 소비자용 포장의 생육은 수입전 라벨 및 조리법 등 록을 마쳐야 하며, 업무는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Policy Coordination Division에서 맡고 있음.

- 북미무역협정국(미국,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서 수출되는 신선/가공가금육 및 냉장/냉동 소고기는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의 수입허가 필요

라. 수산물

1) 수산제품 요구사항

- Code Markings
 - 생선 선적용 포장상자 및 개별 포장에 생선이 포장된 시설부호, 포장 연월일, 원산지를 표기
- 포장
 -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선은 깨끗하고 썩지 않는 용기에 포장해야 함.
- 라벨링
 - 포장의 표기사항은 잘못 표기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현혹의 여지가 있게 표기하면 안되며, 순중량 또는 물을 뺀 중량(draind weight)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순중량
 - 포장상의 중량 표기와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물리적 검사 실시
- 관능검사
 - 오염, 부패, 위생정도, 이물질 및 기생충 등 관련 표준과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감각적 검사와 물리적 검사 실시
- 캔제품
 - 가공공장 및 각 상품코드에 대한 용기번호를 나타내는 코드가 기재되어야 하며 밀폐용기의 저산성식품 규정을 적용받음(농산물 색션의 저산식품란 참조).
- 식품첨가물 및 성분
 - "Marine & Fresh Water Animal Products" 법과 "Canadian Food and Drug Regulations"에 규정된 식품첨가물만 생선제품 제조시 사용 허가

- 화학적 오염물질
 - 화학적 오염물질이 캐나다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 실시
- 자연발생 독성
 - 히스타민을 포함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독성도 캐나다 허용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됨.

2) 검역

- 수산물 수입업체는 수입하는 상품의 유형, 물량, 생산업체명, 원산지, 창고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CFIA에 통보해야 함.
- 식품안전, 위생, 라벨표기 등에서 문제가 있는 수산제품의 캐나다내 반입 금지를 위하여 표본추출후 Canadian Food and Inspection Agency(CFIA)가 검역 실시
- 검역 기록이 좋은 외국 가공업체는 A-list로 분류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의해 검역빈도 감소
- CFIA는 수산물 수입허가증 보유자에게 검역 결과를 통보하며 CFIA의 동의없이 이동이나 판매를 할 수 없음.
- 수입품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반입거절(Refusal of Entry)이 통보되며 통보후 45일 이내에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함.
- 라벨링 오류가 거절의 사유일 경우 라벨을 다시 붙일 수 있는 허가 취득 가능
- 반입이 거절된 상품에 대해 수입업자는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역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

<검역수수료>

- 수입 당시의 상품의 유형과 표기된 무게에 근거한 수입수수료 부가
 - 캔제품 : 0.02 \$/Kg, 손질된 생선 : 0.15 \$/Kg, 기타 생선 : 0.01 \$/Kg
 - 재가공을 위한 생선 : 선적당 \$30 균등

3) 수입금지 수산물

- 쌍각류 연체동물(Bivalve Mollusks) : 스칼럽을 제외한 신선, 냉동굴, 조개, 홍합 및 기타 어패류의 수입은 CFIA의 승인을 받은 위생통제프로그램(Sanitary Control Programs)을 실시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절대 수입금지
- 유독성분을 지닌 복어류(Puffer Fish of the Tetradontidae)
- 살아있는 민물게(mittren crab of the genus Eriocheir)

4) 기록보존

- 캐나다는 수산물 관련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리콜, 불평신고, 처리과정 통제시스템(Process Control System) 관련 의무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FIA가 모든 수입업체의 기록을 감사하고 있음.
- 수입업체는 3년간 기록보존 의무가 있으며 그 내용은
 - 상품소환(리콜)의 경우를 대비하여 첫 번째 판매시점에서의 분배 기록
 - 접수된 불평신고 및 조치내역 기록
 - 통조림 생선 및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손질된 생선의 캐나다 규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가공과정의 문서화 및 기타 증거자료
- ※ 문서자료는 상품 유형별로 처음 선적시 구비해야 하며 동일한 상품을 연이어 선적할 경우 CFIA 요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2. 식품위생제도

가. 부류별 검사기준

□ 과일 및 채소 가공품

- 통조림 가공 및 냉동 과일 및 채소, 채소스프, 카놀라유, 머스타드 가공품, 토마토소스 첨가 스파게티 등의 가공품은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Processed Products Regu-

lations의 적용을 받음.

- 품질, 포장표기, 포장(표준화된 크기 포함), 등급판정, 식품안전 등
- 선적시마다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2부를 구비해야 하며 수입허가는 필요치 않음.
- 해당 제품이 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된 좋은 식품으로 인간의 섭취에 적합함을 내용으로 함.

□ 곡 물

- '95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밀과 보리 및 밀·보리 제조품은 관세율 쿼타폼목(TRQs)으로 제정되었으며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가 발급하는 수입허가 필요

□ 낙농제품

- 국내산 및 수입산 버터, 분유제품, 체다치즈 및 각종치즈 등은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Dairy Products Regulations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품질표기, 포장, 등급판정, 식품안전 등
- Health of Animals Act에 의거 동물질병 발생국산 특정 낙농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낙농제품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의 수입허가 필요
- 모든 낙농제품은 선적시마다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2부를 구비해야 함.
- 해당 제품이 좋은 원료를 사용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으며 선적시를 기준으로 사람의 소비에 적합함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

□ 달걀 및 달걀 가공품

- 달걀 및 달걀 가공품은 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Egg

Regulations and Processed Egg Regulations의 규정 준수

- 검역 프로그램 및 등급표준이 캐나다와 동일한 국가산 제품만 수입할 수 있으며 선적시 캐나다 표준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수출국의 검역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닭의 새알 및 가공 오리알은 Egg Regulation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CITES)”하에 있는 조류 및 파충류의 알은 원산지국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Wild Animal and Plant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provincial Trade Act”법에 의해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의 수입허가 필요

□ 꿀

- 국내산 및 수입산 꿀과 꿀제품은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하의 Honey Regulations의 적용을 받음.
 - 품질, 포장표기, 포장, 등급판정, 식품안전 등
- 선적시마다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2부 구비
- 현존하는 동물질병으로 전파 위험이 있는 국가의 꿀 수입 금지

□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 Environment Canada가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품목을 관리하며 멸종위기의 희귀 동·식물 수출입시 CITES 품목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CITES 해당 동·식물은 산것과 죽은 것, 부분과 부산물까지 모두 통제대상으로 수입허가 필요

□ 단풍나무액제품

- 단풍나무의 수액으로 만든 단풍나

무 시럽, 단풍나무 설탕, 단풍나무 버터 등의 각종 단풍나무액 제품은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의 Maple Products Regulation의 적용을 받음.

나. 특별식품 검사기준

□ 시범판매용 식품(Test Market Foods)

- 일반적으로 시범판매용 식품은 이 중언어표기 라벨 및 표준화된 용기 크기를 제외하고 모든 측면에서 현재의 식품규정에 적합해야 함.
- 시범판매용 식품은 그 상태로는 캐나다내에서 판매된 적이 없는 식품이어야 하고 성분, 기능, 상태나 포장형태 등의 측면에서 캐나다내 시판중인 식품과 어떤 식으로든 차이가 있어야 함.
-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Food and Drug Regulation에 근거하여 임시 판매허용서(Temporary Marketing Authorization Letter)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시범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취급업체에서 실시하기 6주전에 윗부분에 회사명이 인쇄된 편지지에 “Notice of Intention to Test Market” 양식을 작성, 신청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포장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샘플 (상품과 라벨 그림으로 대체 가능) 함께 제출
 - 배포 물량
 - 시범판매 기간(최장 12개월)
 - 시험판매되는 곳의 지리적 영역
 - 일반적으로 주(province) 단위는 광범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영어나 불어외의 언어로 라벨을 표기할 경우, 모든 하부 행정지역이 영어나 불어가 모국어인 인구비율이 10%이하인 시단범위가 허용범위
 - 관련 센서스 정보 문의 : Statistics Canada, General Enquiries R.H. Coates Building, Tunney's Pasture, Ottawa, Ontario K1A 0T6 (전화) 613-951-8116

- 시범판매용 상품이 캐나다에서 판매된 적이 없으며 다른 상품과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는 정보 및 보충자료

○ “Notice of Intention to Test Market” 발송 주소
 Director, Food Division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59 Camelot Drive
 Nepean, Ontario K1A 0Y9

□ 알레르기 유발식품(Food Allergens)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증상도 가벼운 것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다양함. 이에 따라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방적 라벨표기 (예: “May contain peanuts”)
- 알레르기 유발물질
 - 땅콩, 참깨, 콩, 밀
 - 견과류: 아몬드, 브라질 호두, 캐슈, 개암, 마카다미아스(macadamias),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등
 - 우유, 생선
 - 갑각류: 게, 가재, 바닷가재, 새우 등
 - 패류: 대합, 홍합, 굴, 스켈럽 등
 - 아황산염

□ 비타민과 미네랄 강화식품

- Food and Drug Regulation, Section d.03.002
 - 비타민과 미네랄이 강화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영양소에 관해 규정

□ 인공향미

- 인공향미(예: 사과맛)가 단독으로 또는 천연향미와 함께 첨가되어 있고 맛의 성분을 나타내는 그림(사과 그림)이 라벨에 있을 경우, 첨가된 향미가 인공적이며 모조품이라는 정보를 그림위나 인접한 위치에 영어와 불어로 표기해야 함.

□ 밀봉용기 포장의 저산성식품(Low Acid Foods)

- 밀봉용기에 포장된 저산성식품(LAF-HSC: Low Acid Foods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은 pH 4.6 이상, Water Activity 0.85이상의 미생물과 공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용기에 포장된 식품으로 캔식품, 테트라 포장식품 등이 있음.
 - Food and Drug Regulations, Division 27에서 규정
- 밀봉용기가 팽창한 상태, 부적절하게 밀봉 또는 밀봉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된 용기는 판매 금지
- 밀봉용기의 라벨 또는 용기에는 명료하고 영구적인 방식의 code 또는 lot number 표기
 - 표기사항: 상품을 살균한 시설의 번호 및 일/월/연도
- 부적절한 살균 및 용기 상태가 불량할 경우
 - 담당관의 판단하에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제조 및 살균포장 과정의 증거자료를 명문으로 요청하고 증거자료가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판매 금지

□ 유아식(모유대체식품)

- 유아용 식품의 성분 및 라벨표기 관련 규정은 Food and Drug Regulations, Division 25에 기재
- 판매전 Health Canada에 “pre-market notification form”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하여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식이요법용 식품

- 체중조절을 포함하여 특별한 식이요법용 식품의 성분 및 포장표기 관련 규정은 Food and Drug Regulation의 Division 24에 기재
 - 탄수화물 감소식품, 저염식품, 저칼로리 식품, 액체조제식, 대용식품, 영양보조제, 글루텐 비함유 식품 등

〈식이요법용 식품의 성분 및 포장용기 규정〉

종 류	규 정	라 벨 요 건
탄수화물 감소식품	탄수화물 칼로리가 총칼로리의 25% 미만이고 탄수화물 함량이 일반식품의 50%이하	○ 주전시면에 “carbohydrate-reduced” (일반명과 같은 크기) ○ 열량가(Cal/kJ),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g) 정보
무당식품	탄수화물 함량이 0.25%이하이고 100그램 또는 100밀리리터당 1칼로리 이하	○ 주전시면에 “sugar-free” 또는 “sugarless”(일반명과 같은 크기) ○ 열량가(Cal/kJ),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g) 정보
열량감소 식품	일반식품의 50%이하의 칼로리	○ 주전시면에 “calorie-reduced” (일반명과 같은 크기) ○ 열량가(Cal/kJ),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g) 정보
저칼로리 식품	1인분(serving)당 15칼로리이하이고 1일 권장량당 30칼로리이하	○ 주전시면에 “low calorie” (일반명과 같은 크기) ○ 열량가(Cal/kJ),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g) 정보
저염식품	나트륨 함량이 일반식품의 50%이하이고 육류/생선류는 100g당 80mg이하, 체다치즈는 100g당 50mg이하, 기타식품은 100g당 50mg이하	○ 주전시면에 “low-sodium” (일반명과 같은 크기) ○ 열량가(Cal/kJ),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g), 나트륨/칼륨함량(mg) 정보

□ 신중식품/유전자변형식품/생명공학식품

- 식품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제조된 식품으로
 - 캐나다에서 식품으로 사용된 전례가 없는 제품
 - 캐나다에서 전례가 없는 제조과정에 의해 제조된 식품
 - 식품용이나 식품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전례가 없는 미생물을 함유한 식품
 - 유전자 변형에 의해 전례가 없는 변형된 특성이 있는 식품이나 그와 같이 변형된 특성을 지닌 유기체로 생산한 식품
 - 기타 가능한 변형식품
- 판매전 Health Canada에 “pre-market

notification form”을 작성하여 통보하여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일차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모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식품의 라벨링 문제는 Health Canada와 식품검역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공동 관장

□ 방사선 처리식품

- 현재 방사선 처리가 허용된 식품은 감자, 양파, 밀, 밀가루, 통밀가루, 향신료 원형 및 간 것, 건조(dehydrated) 조리 조미료 등이 있음.
- 방사선 처리식품에 대한 특별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며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를 준수하지

않은 방사선 처리식품은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다.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 함유식품

- Food and Drug Regulation, Division 16 : 식품첨가물의 종류, 함유식품, 최대사용한도 규정이 용도별로도 표화
- 용도별 분류
 - Table I : 덩어리짐 방부제용 식품첨가물
 - Table II : 표백, 숙성, 반죽유지용 식품첨가물
 - Table III : 색소제 식품첨가물
 - Table IV : 유화제, 교질화제, 농후제용 식품첨가물
 - Table V : 식품효소용 식품첨가물
 - Table VI : 균힘용제 식품첨가물
 - Table VII : 광택제용 식품첨가물
 - Table VIII : 각종 식품첨가물
 - Table IX : 당제용 식품첨가물
 - Table X : pH 조정, 산반응 물질, 수분조정제용 식품첨가물
 - Table XI
 - I : Class I 방부제용 식품첨가물
 - II : Class II 방부제용 식품첨가물
 - III : Class III 방부제용 식품첨가물

IV : Class IV 방부제용 식품첨가물

- Table XII : 분리용 식품첨가물
- Table XIII : 전분 변경용제 식품첨가물
- Table XIV : 효모식품용 식품첨가물
- Table XV : 추출용매용 식품첨가물

□ 식품색소

- 합성식품색소는 식품첨가물 중 사용하여전 반드시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일한 물질로서 식품색소에 관한 규정은 Food and Drug Regulation, Division 6 및 Division 16의 표 III에 기재되어 있음.
 - Division 6 : 자연색소와 합성색소의 종류 및 정의
 - Division 16, 표 III : 색소제별 첨가가능 식품 및 허용한도
 - ※ 한국식품의 단무지 등에 많이 사용되는 합성색소인 Tartrazine의 허용한도는 300 p.p.m.
-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색소는 최근 캐나다에서도 허용이 되며, 새로운 색소 허가문제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Health Protection Branch에서 관장
- 캐나다 허용색소 및 미국/유럽의 상용 명칭
 - 캐나다는 국제적 공용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명칭에 상응하는 미국 및 유럽식 표기 인정

〈합 성 색 소〉

캐 나 다	미 국	유 럽
Allura Red	FD & C Red # 40	129
Amaranth	FD & C Red # 2	123
Erythrosine	FD & C Red # 3	127
*Ponceau SX	FD & C Red # 4	125
*Citrus Red No. 2	Citrus Red # 2	121
Tartrazine	FD & C Yellow # 5	102
Sunset Yellow FCF	FD & C Yellow # 6	110
Fast Green FCF	FD & C Green # 3	143
Brilliant Blue FCF	FD & C Blue # 1	133
Indigotine	FD & C Blue # 2	132

※ Ponceau SX와 Citrus Red No. 2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

〈천연색소〉

캐나다	유럽
Aluminum Metal	173
Alkanet	103
Annatto	160 (b)
Anthocyanins	163
Beet Red	162
Canthaxanthin	161(g)
Carbon Black	153
Carotene	160 (a)
Charcoal	N/A
Chlorophyll	140
Cochineal	120
Iron Oxide	172
Orchil	121
Paprika	N/A
Riboflavin	101
Saffron	N/A
Saunderswood	N/A
Silver Metal	174
Titanium Dioxide	171
Turmeric	100
Xanthophyll	161
B-apo-8-Carotenoate	160 (e)
Ethyl B-apo-Carotenoate	160 (f)
Caramel	150

※ N/A : Not Available

마. 식품표시제도

1) 관련 부서

- 캐나다 식품 라벨링 규정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은 Health Canada(HC), Industry Canada(IC),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CFIA)에 있음.
- Health Canada
 - "Food and Drug Act"에 근거하여 건강과 영양과 관련된 식품 라벨링 정책의 개발, 건강 및 안전 표준의 관리 책임
- Industry Canada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근거한 기본적 식품라벨

정보, 순중량, 미터법화, 이중언어 표기 등의 관리 책임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식품 라벨링, 포장, 광고 및 등급, 품질, 성분 등에 관한 일반적 라벨링 규정 관련 위반 사항을 관리하며 관련법은 "Food and Drug Act",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Meat Inspection Act", "Fish Inspection Act"
 - 모든 유통단계에서 이상의 모든 규정의 집행 책임

2) 라벨링 기본요건

□ 일반적 요건

- 식품라벨에 기재된 정보는 진실, 정확해야 함.
-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한 활자 높이는 최소한 소문자 "o"를 기준으로 1.6mm(1/16인치)이상이 되어야 함.

□ 이중언어 표기

- 식품라벨의 모든 필수 정보는 불어와 영어의 2개 공용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예외가 적용됨.
 - 생산업체 및 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는 불어와 영어중 1개로 표기 가능
 - 모든 정보가 하나의 공용어로 표기 가능한 경우는
 - 선적용 컨테이너
 - 불어와 영어중 한가지를 모국어로 하는 주민 비율이 10%이하인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상품
 - 시험판매용 제품(Test Market Products)
 - Food and Drug Regulations에 정의된 특수식품
 - 퀘벡주는 관할구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불어 사용관련 추가 요구사항이 있음.

□ 일반명(Common Name)

- Food and Drug Regulation 및 기타 연방 규정에 명시된 식품명과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품명을 포장규정에 따라 기재

- 불어와 영어의 2개 국어 표기 및 소문자 “o”에 근거한 최소 1.6mm이상의 문자크기 조건을 만족하고 주전시면에 표기

□ 순중량

- 주전시면에 개수 및 미터법 도량형 (무게 : g, kg 부피 : l, ml)으로 이중언어 표기하고 소문자 “o”에 근거한 최소 1.6mm이상의 문자 크기로 표기
- 숫자표기는 볼드체로 기재하며, 전시면 크기에 따른 글자크기 기준은 다음과 같음.

〈전시면 크기에 따른 글자크기 기준〉

주전시면적		최소 글자크기	
평방센티미터	평방인치	밀리미터	인치
32이하	5이하	2	1/16
32보다 크고 258이하	5보다 크고 40이하	3	1/8
258보다 크고 645이하	40보다 크고 100이하	6	1/4
645보다 크고 2580이하	100보다 크고 400이하	10	3/8
2580보다 클 때	400보다 클 때	13	1/2

- 순중량은 반올림하여 3자리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100이하일 경우 2자리 표기
 - 453.59는 454로, 85.6은 86으로, 6.43은 6.4로

□ 회사명과 주소

- 제조업체나 생산업체 등의 회사명은 바닥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기재 가능하며, 불어 또는 영어로 소문자 “o” 기준 1.6mm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우편을 보낼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함.
- 캐나다의 수입업체에서 외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입업체명과 주소를 “imported

by(for)/importe par(pour)” 뒤에 기재하거나, 생산자와 수입업체를 모두 기재 가능

□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 90일이내인 상품은 “best-before” 날짜를 기재하며 다음의 예외 적용
 - 포장된 신선 과일 및 채소
 - 식당, 비행기 등에서 제공되는 개인용 포장
 - 자동판매기 판매제품 등
- 소매용 포장 제품중 유통기한이 90일이하인 제품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또는 포장 날짜와 보관방법을 기재
- 소매용 외의 포장제품으로 90일이하의 유통기한 제품은 “best before” / “meilleur avant” 날짜와 함께 일상온도 보관이 아닐 경우 보관방법을 기재
- 유통기한 표기는 연, 월, 일의 순으로 하며 ‘월’ 표기의 이중언어 심볼은 다음과 같음.
 - 1월 : JA, 2월 : FE, 3월 : MR, 4월 : AL
 - 5월 : MA, 6월 : JN, 7월 : JL, 8월 : AU
 - 9월 : SE, 10월 : OC, 11월 : NO, 12월 : DE

□ 표준 용기크기

- 과일 및 야채 콩조림, 잼, 피클외 많은 종류의 식품이 표준 사이즈의 용기로만 판매가 가능하며 다음의 법에 기준 설정
- Consumer Packages and Labelling Act, Section 2.11.1.
 - 해당되는 소매용 포장식품에 대한 용기 크기 표준화
-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및 Meat Inspection Act
 - 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일부, 낙농제품, 꿀과 단풍나무 시럽, 일부 육류 및 가공육 제품에 대한 표준 용기 설정

□ 성분정보

-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포장상품은 성분 정보를 기재해야 되며 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
 - 소매업체에서 벌크를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상품(혼합넛트류 제외)
 - 식당이나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개인용 포장제품
 - 자동판매기용 포장제품
 - 소매업체에서 포장한 조리된 육류 및 가공육 제품
 - 표준화된 알콜음료 및 식초
- 일반적으로 성분은 함유량이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것의 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맨뒤에 기재할 수 있음.
 - 향신료, 조미료, 허브류, 자연/인공 향미, 향미촉진제, 식품첨가물,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및 그 파생물 등
- 성분(ingredient) 및 그 구성요소(component : ingredient of ingredient)는 보통 일반명으로 기재
- 성분구성요소는 성분명 뒤 괄호안에 함유량의 순으로 기재하거나 성분표기없이 기재 가능
-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식품이나 일부 조미료 등은 성분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향미 촉진제와 같이 최종 식품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은 반드시 기재

□ 선적용 컨테이너 라벨

-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선적용 컨테이너는 이중언어 표기를 할 필요가 없고, Weight and Measures Act하에 미터법 또는 캐나다 표기법으로 순중량을 표기할 수 있으나, 기타 모든 라벨정보를 기재해야 함.

□ 기타 의무표기사항

- 기타 의무표기사항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예 : 식초의 경우 아세트산 함유 비율) 마찬가지로 이중언어 표기가 되어야 함

3) 성분/품질/함량/산지 관련 주장(claim)

- 라벨과 광고에 사용된 언어적 시각적 요소 및 그것이 나타내는 이미지가 과장되어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됨.

4) 영양분석표

- 자발적 조항이나 부착시는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ing”과 “Food and Drug Regulation”에 규정된 내용과 맞게 작성되어야 함.